



공정거래위원회

수신자 서울시장 (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장)

(경유)

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

1. 귀 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여 2004.11.12. 실시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(701~704공구)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참여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심의한 결과, <붙임1>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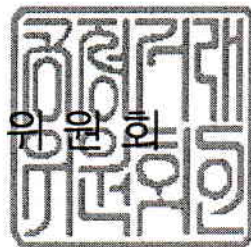
2. 다만, 피심인이 동 의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후 의결내용이 확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또한, <붙임1>의 의결서 상의 처분은 「2006.8.15.부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(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부처 공고)」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(제2007-361호) 사본 1부(별도송부).

2.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부처 공고문 사본 1부(별도송부). 끝.

공정거래위원회



조사관 정성인

카르텔정책팀장 정종환

카르텔조사단장 정재찬

전결 07/26

협조자

시행 카르텔정책팀-885 (2007.07.26.) 접수

우 427-713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공정거래위원회 5동 102호

전화 02-2110-4909

전송 02-503-2314

/ saintjung@ftc.go.kr

/ <http://www.ftc.go.kr>

/ 공개